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직 등 사전 심사 전환 및 간사 명칭 변경〉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14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 전환 및 심사기한 설정	3
2. ‘간사’ 명칭의 ‘부위원장’ 변경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정 · 박지원 · 민병덕 · 백혜련 · 정태호 · 김현정
이병진 · 최기상 · 복기왕 · 김병기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 의안번호 : 37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기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겸직 심사가 무기한 이뤄지지 않게 됨. 이는 심사 기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추후 의원 겸직이 불허될 경우, 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한편,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

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그러나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국회사무처의 ‘간사’ 표기도 Vice Chairperson, ‘부위원장’으로 통용되기에 간사라는 번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안 제29조제4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때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등). 또한 ‘간사’를 역할에 적합한 명칭인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 전환 및 심사기한 설정 (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당선 전’의 경우에는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존치하되, ‘임기 중’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전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그 심사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u>[임기 중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u> ○ 의원이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 ↓ ○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당선 전 동일)	<u>[임기 중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u> ○ 의원이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 ↓ ○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의원에게 통보(당선 전 동일)
※ 현행법은 ‘당선 전’이나 ‘임기 중’ 겸직·영리업무 종사 불가 결정 시 3개월 이내 휴직·사직 또는 6개월 이내 휴업·폐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기 중’ 심사방식을 전환(사후→사전)함에 따라 해당 의무는 ‘당선 전’으로 한정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겸직 금지) ①·② (생략)	제29조(겸직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u>가지</u>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 <u>가지</u> <u>려는</u> -----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u>결과를</u>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 ----- ----- ----- ----- ----- ----- ----- <u>결과를</u> 의원이 신고한 날 <u>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u>결하고</u>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⑥ ----- <u>당선 전부터</u> <u>결하고</u> ----- ----- -----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② (생략)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 <u>종사하려는</u> ----- ----- -----.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 ----- ----- ----- ----- <u>결과를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⑥ ----- <u>당선 전부터 종사하고</u> ----- ----- ----- ----- -----.

「국회법」 제29조¹⁾는 의원의 직무전념성 확보를 위하여 겸직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 ② 법률에 따른 임명·위촉직, ③ 정당의 직에 한정하여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제29조의²⁾는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규정하면서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리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있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의원이 ‘당선 전’에 그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임기 중’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② 법률에 따른 임명·위촉직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능 여부를 결정함. 의원이 ‘당선 전’에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임기 중’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침.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려 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다른 직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사직하거나 종사 중인 영리업무를 휴업·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표-2] 2017년 이후 겸직 신고 및 심사 현황(2024. 8. 31. 기준)

구 분	연 도	가 능	불 가	심사제외 ¹⁾	미심사 ²⁾	총 계
제20대 국회	2017년	61	28	-	4	93
	2018년	31	14	1	-	46
	2019년	1	2	-	55	58
	2020년	-	-	-	10	10

구 분	연 도	가 능	불 가	심사제외 ¹⁾	미심사 ²⁾	총 계
제21대 국회	2020년	59	79	6	4	148
	2021년	46	25	4	3	78
	2022년	39	18	7	2	66
	2023년	27	28	3	13	71
	2024년	2	1	-	1	4
제22대 국회	2024년	131	42	12	1	186

주 1) 친목단체, 임기만료 직위 등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대상이 아닌 직

주 2) 윤리심사자문위 미구성, 심사 전 사직,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직 등

* 자료: 국회사무처

[표-3] 2017년 이후 영리업무 종사 신고 및 심사 현황(2024. 8. 31. 기준)

구 분	연 도	가 능	불 가	심사제외	미심사	총 계
제20대 국회	2017년	-	-	1	-	1
	2018년	2	3	-	-	5
	2019년	-	-	-	3	3
	2020년	-	-	-	-	-
제21대 국회	2020년	26	-	-	-	26
	2021년	3	-	-	-	3
	2022년	1	-	1	-	2
	2023년	3	-	5	-	8
	2024년	1	-	-	-	1
제22대 국회	2024년	36	-	-	-	36

* 자료: 국회사무처

한편, 의장은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데,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최초 1개월+연장 1개월) 이내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³⁾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 사항을 신고받는 즉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바로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신고사항을 취합하여 요구하는 등 그 요구 시기를 적절히 안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의 통보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심사 절차를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의원이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그 심사기한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이 최대 2개월

3) 2017년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관련 회의 현황(2024. 8. 31. 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회의	14	7	3	1	3	10	14	7
겸직 심사 회의 (영리업무 종사 심사 회의)	10 (1)	7 (1)	1 (0)	1 (1)	3 (1)	2 (0)	5 (5)	2 (2)

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① 검직 내용 공개에 관한 현행 「국회법」 제29조제7항4)은 의장이 의원에게 검직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 검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 심사를 통하여 검직 가능 결정을 받은 의원이 실제 해당 직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알 수가 없으므로, 해당 직을 가지게 된 경우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한 날부터 특정 기간 이내 검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② 개정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임기 중 검직하려 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게 되는데, ‘지체 없이’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일 때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특정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검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전 심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상 ‘사전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 더하여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

4) 「국회법」 제29조(검직 금지)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발의, 의안번호 제167호)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간사’ 명칭의 ‘부위원장’ 변경 (안 제50조 등)

개정안은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⁵⁾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6)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제50조(부위원장) ① ----- -----부위원장-----.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부위원장은-----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 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 무를 대리한다.	③ ----- -----부위원장이----- -----.
④ 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소속 의 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 -----부위원 장의-----.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 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 ----- ----- ----- ----- -----부위원장----- -----부위원장----- -----.

5) 개정안은 부칙 제5조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상 ‘감사’도 ‘부위·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6) 그 밖의 개정조문: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제2항, 제49조(위원장의 직무)제2항,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제2항제4항·제5항, 제58조(위원회의 심사)제4항,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60조(위원의 발언)제1항, 제67조(위원장의 보고)제3항, 제69조(위원회 회의록)제3항, 제82조의2(입법예고)제1항,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제3항,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제1항·제3항,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제4항,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제3항

현행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⁷⁾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을 제정할 때부터 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⁸⁾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일시, 입법예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6] 「국회법」에 따른 간사의 역할

□ 위원장과 간사 협의사항

-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허가(국§32의5②)
-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결정(국§49②)
-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국§57의2⑤)
-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해당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국§58④)
- 위원의 발언시간 결정(국§60①)
-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국§82의2①)
-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시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 시간 할당(국§84③)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 생략(국§86①)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국§86③)
- 국무위원 등의 대리 출석 · 답변 허가(국§121④)
- 폐회 중 위원의 서류제출요구를 정부 · 행정기관 등에 대해 요구(국§128③)

7) 간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별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일시, 입법예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역할을 함(국회사무처, 「쉽게 풀어 쓴 의회용어」, 2018, p.22).

8) 「국회법」(1948. 10. 2. 제정) 제19조 위원회에는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간사를 둔다.

□ 위원장과 간사 합의사항

- 안전조정위원회 활동기한(국§57의2②)
-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조정위원의 수 결정(국§57의2④)
- 의안의 자동상정 간주 미적용(국§59의2)

□ 위원장 직무대리 및 직무대행

- 위원장 사고시 :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대리(국§50③)
- 위원장 궐위시 :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대리(국§50④)
-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직무대행(국§50⑤)

□ 그 밖의 간사 역할

-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 보고 시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 보고(국§67③)
- 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국§69③)

그런데, 간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⁹⁾을 의미하여 현행 국회관계법에 따른 간사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다수의 법령에서 간사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간사’라는 명칭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¹¹⁾¹²⁾

개정안은 이와 같이 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간사’의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간사’라는 명칭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국회관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다만, 국회는 제헌국회에서부터 ‘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용어의 역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회관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대리 등 통상적인 위원회 조직의 부위원장 역할도 수행하지만,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별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소속 위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교섭단체 간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으므로,¹³⁾ ‘간사’ 명칭의 변경 여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12) 참고로, 일반적으로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위원장은 Chairperson)을 사용하고 있음(국회사무처, 「의회외교 영문 표기집」, 2020, p.29).

13) 본회의에 있어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